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새로운 법제도 시행 등으로 신규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와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에 따른 기관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평가분석업무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이관에 따른 업무조정 (안 제5조제2항)
-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업무의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규정(안 제9조제2항)
- 건설기계등록관련 업무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 규정 (안 제19조제12호)

4. 참고사항

- 도 자치행정과-48('06.1.3)호의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보강지침 통보
- 도 자치행정과-4917('06.5.17)호의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관련 인력 배치 권고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 제정 등으로 신규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와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기관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임
- 주요 개정내용은
 -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의 「시정주요 업무평가」 등의 평가분석 업무를 기획정보실로 조정하고
 -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「도시기반시설부담금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업무」를 건설도시국으로 조정하였으며
 - 건설기계등록 업무 증가 등으로 신설된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일부 조정하는 등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개정안임